「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장미경 의원

2. 찬 성 자: 김원섭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○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고, 2017년 개정 이후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·운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개정 및 명칭 변경(구미국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)(안 제1조~제2조)

나.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탄력적·효율적으로 운영(안 제13조)

다. 승마장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변경(별표1, 별표2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제공인승마경기장 지정에 따른 시설명칭을 “구미국제승마장”으로 변경하고, 장기간 동결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의 명칭을 ‘구미시 승마장’에서 ‘구미국제승마장’으로 변경한 것은 시설의 대외적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 관내 승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별표1, 2에서 승마장 시설 사용료와 각종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, 특히 관외 이용요금 차등 인상은 관외 이용 비중이 높은 운영 구조를 고려할 때 수입 증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이용료 인상에 따라 기존 이용객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, 향후 승마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 개선을 병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